

대전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127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1275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0가합1024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래영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가영, 심지은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명

변론 종결 2022. 12. 7.

판결 선고 2023. 1. 18.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0가합10248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E와 피고 사이에 2018. 10. 22. 22:22:39 체결된 임차계약을 73,519,5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73,519,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가. E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각 취소한다.

1)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는, E와 피고 사이에 2018. 10. 22. 22:22:3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원고 B와 피고 사이에서는, E와 피고 사이에 2018. 12. 24. 22:21:51 및 2019. 1. 21.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3) 원고 C와 피고 사이에서는, E와 피고 사이에 2018. 1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원고 B에 관하여는 2019. 1. 21.부터, 원고 C에 관하여는 2018. 1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가. E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임치계약을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각 취소한다.

1) 원고 A와 피고 사이에서는, E와 피고 사이에 2018. 10. 22. 22:22:39 체결된 임차계약을 취소하고,

2) 원고 B와 피고 사이에서는, E와 피고 사이에 2018. 12. 24. 22:21:51 및 2019. 1. 21. 체결된 각 임차계약을 취소하고,

3) 원고 C와 피고 사이에서는, E와 피고 사이에 2018. 12. 13. 체결된 임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원고 B에 관하여는 2019. 1. 21.부터, 원고 C에 관하여는 2018. 1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위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2-3행의 "합계 6,600만 원(= 3,000만 원 + 3,300만 원)"을 "합계 6,600만 원(= 3,300만 원 + 3,3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한편, 을 제2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22. 6. 9. 대전지방법원 AL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12,495,644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 A이 배당받은 금원을 위 손해배상채권 원금 및 지연손해금(2018. 4. 3.부터 각 이 사건 민사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에 변제충당하게 되면,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 중 변제충당 후 남은 채권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22. 6. 9. 기준 원금 66,000,000원, 지연손해금 3,613,781원(원 미만 버림)이 되고, 여기에 변제충당일 이후로써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인 지연손해금 3,905,753원(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2. 6.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2. 7.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한 원고 A의 피보전채권 원리금 합계액은 73,519,534원(= 원금 66,000,000원 + 변제충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 3,613,781원 + 변제충당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3,905,753원)이 된다.1) 5)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원고 A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가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17억 5,952만 원)을 집행채권으로 E 소유의 세종시 W 전 945㎡ 등 4필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22. 6.경 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았고, E 소유의 인천 강화군 O, P 토지 및 위 지상 2층 콘크리트 건물에 관하여 (주)AD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하여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았으므로, 원고 B의 피보전채권은 상당 부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2,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22. 6. 9. 대전지방법원 AL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361,056,554원을, 2022. 6. 28. 인천지방법원 AM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96,890,944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 B가 배당받은 금원을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채권 및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하게 되면, 원고 B의 손해배상채권 중 변제충당 후 남은 채권은 2022. 6. 28. 기준 원금 1,293,973,295원 및 이에 대한 2022. 6. 29.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2. 1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8,538,315원(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인 1,322,511,610원(= 원금 1,293,973,295원 + 지연손해금 28,538,315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여전히 원고 B의 피보전채권액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 B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네 번째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가 주식투자금 1억원을 반환받은 바가 있고, AN 골프회원권의 배당이익을 배당받았으며, 1억원 상당의 F 안성공장 메디호를 생산기계 2세트를 압류한 뒤 무단으로 위 생산설비를 해체하여 가져가 원고 C는 자신의 E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원고 C의 피보전채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는 2020. 4. 17. F 소유의 기계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12,350,000원의 경매대금을 수령하였고, 2021. 8. 27. F 소유의 AN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141,826,47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원고 C가 E로부터 주식투자금 1억 원을 반환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따로 제출된 바 없다), 이에 따라 원고 C가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채권 및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하게 되면, 원고 C의 손해배상채권 중 변제충당 후 남은 채권은 2021. 8. 27. 기준 원금 414,241,681원 및 이에 대한 2021. 8. 28.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2. 1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6,500,118원(원 미만 버림)의 합계액인 440,741,799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여전히 원고 C의 피보전채권액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 C의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24면 제4행부터 제26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 A의 경우

1) 취소의 범위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원금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4465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의 피보전채권 원리금이 73,519,534원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피보전채권 원리금이 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2018. 10. 22. 22:22:39 이루어진 금전지급행위의 송금액(1억 원)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중 적은 금액인 원고 A의 피보전채권 원리금 한도 내에서 위 금전지급행위에 의한 임치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E와 피고 사이에 2018. 10. 22. 22:22:39 체결된 임치계약은 73,519,5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이나 동산일 경우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 내지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본소), 99다23475(반소)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2)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이는 법정이자와 성질이 유사하다)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이며, 그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73,519,5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취소를 구하는 금전지급행위가 있었던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내지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액 가) 원고 B는 F의 주요 임원으로서 소개수당 및 인센티브 20~50%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이율의 수익을 얻고자 신중한 검토 없이 고액을 투자한 점, E가 홍보한 사업 중 일부는 실제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원고 B가 주장하는 2016. 11. 1.부터 2018. 7. 31.까지 E에게 주식매수대금 등으로 입금한 합계 14억 9,530만 원 중 E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위 금액 중 50%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 C는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과 동일한 채권을 주장한 별개의 소송에서 E에 대한 채권액이 1억 6,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E에 대한 불법행위채권은 위 금액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 C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 C 또한 F의 책임수석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주도적으로 주식을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E의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자백법리 오해 피고가 제1심에서 '보관'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E와 사이의 금전거래 행위에 관한 단순한 법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가 E의 자금관리 용도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함에 따라, E가 수시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가 E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E 또는 F에게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와 E 사이에 E가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임치금 반환 설령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임치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임치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원상회복을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보전채권액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피해자의 기망당한 상태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488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나) 원고 B의 피보전채권액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B가 2016. 11. 1.부터 2018. 7. 31.까지 E에게 주식매수대금 등으로 입금한 합계 14억 9,530만 원에 대하여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인 E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E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위 금액 중 50%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C의 피보전채권액

먼저 원고 C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별개의 소송에서 1억 6,200만 원으로 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8호증, 을 제2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은 원고 C가 E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소송(2020가합100288)에서 '원고 C가 F의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이후 투자금반환을 요구하자, E가 원고 C의 보유 주식을 반환하면 주식 반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E는 위 회사의 주식을 다시 적정한 가격에 취득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원고 C에게 주식 13,000주의 양도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한편, 나머지 주식양도에 관한 약정금 부분과 대여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소송의 청구원인은 원고 C의 주식반환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로 원고 C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삼고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 C가 2016. 9. 6.부터 2018. 8. 31.까지 E에게 주식매수대금 등으로 입금한 합계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인 E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E의 손해배상책임이 50%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자백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어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판결 등 참조),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가 E와 사이의 금전거래의 경위를 밝힌 것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사실의 진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20. 5. 6.자 답변서에서 'E가 피고에게 보낸 돈은 ... 보관 명목이었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부분이나, 2020. 10. 19.자 준비서면에서 E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보관위탁"이라는 목차 아래 'E가 F를 경영하면서 잠시 맡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아내인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E는 돈을 넣었다가 빼가는 방식으로 수시로 돈을 입금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 자기 또는 F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모두 E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인 점, ②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금전의 보관(임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예비적으로 임치로 특정하여 주장'함으로써 피고의 진술을 원용한 점, ③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2022. 8. 16.자 항소이유서에서 'E는 수시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는 E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E 또는 F에 입금된 금액 이상을 송금하였다, E의 자금관리 용도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이라고 기재해두고 있고,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도 'E와 피고 사이의 금전관계에 관하여 피고가 E에게 통장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라며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제1심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E와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한 경위를 밝힌 것은 어디까지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대한 주요사실로서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피고와 E

사이의 금전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또는 평가로는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이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보고, 그 법적 성격이 금전의 보관위탁으로서 소비임치(민법 제693, 70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나, 이후 피고의 자백취소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치금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로 임치금 반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임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을 구할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준명

판사모성준

판사이혜성

별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그 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금전은 거래관념상 물건으로서의 화폐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가 표상하고 있는 가치에 의미를 두고 거래되고 있으므로, 수익자가 금전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해행위를 한 경우, 지급받은 화폐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가치가 동일한 금전을 반환한다면 이 또한 원상회복에 있어 현물반환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현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라도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